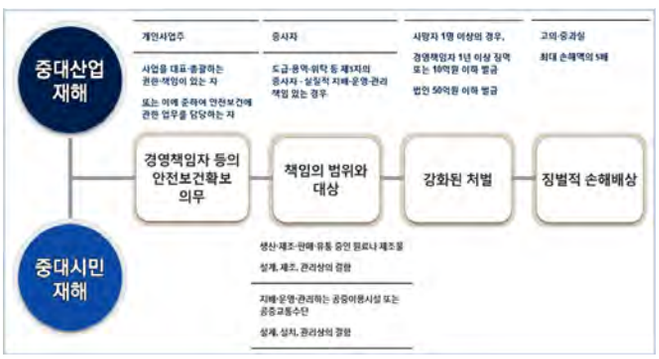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선임노무사 이동현

1.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1. 1. 27.)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합니다.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형사처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 이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과 같이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기에,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대상과 이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후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완벽히 이행했고, 미흡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이

“컴플라이언스 대응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key)

위임법령 및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련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공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분포하여 있고, ② 개별 공사 현장 역시 상당히 넓은 지역(예컨대, 대규모 토목 공사 현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③ 나아가 주택 공사, 터널 공사, 교량 공사, 발전설비 공사, 특수 항만시설 공사 등과 같이 각각의 개별 공사의 특성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 고유의 특성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할 때,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도급관계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수가 많으며, 각각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으로는 대표이사 이외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표이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그 입법취지가 실현된다는 반론도 상당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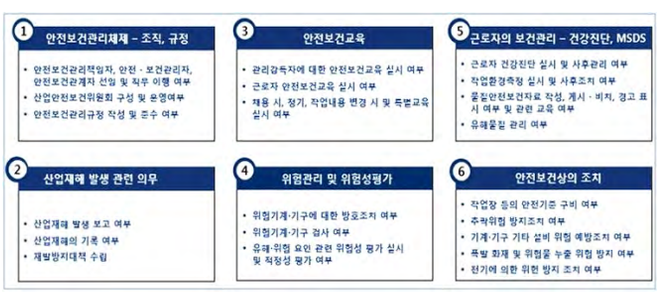
이처럼 현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동법 시행 전에 안전·보건확보 조치로 규정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에 기초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구축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3.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조치를 경영책임자 수준에서 계획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초점을 둔 컴플라이언스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컴플라이언스 수행 범위

안전보건 법규의 주요 영역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바, 안전보건 관련 컴플라이언스는 해당 주요 영역들을 포괄하고 각 분야별 실질적인 수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컴플라이언스 수행 절차 및 수행 방안

컴플라이언스 수행절차는 리스크 식별 – 평가 – 안전보건 확보방안 수립 – 점검 등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법규상의 전반적인 의무가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리스크를 도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공정/작업별 관리체계·수준 파악 및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규정/절차서/매뉴얼 등 제반 서류가 법령의 주요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서류간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단계가 완료되었으면, 다음 단계로는 주요 리스크에 적합한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수립·시행하는데, 그 예로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설계 보완, 방호조치 추가, 작업행동절차 등 업무 프로세스 변경, 안전보호구 추가·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규정/절차서/매뉴얼 등 제반 서류도 개선방안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작업을 함에 있어 개선된 안전보건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층별/단계별/작업별 정기교육과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포상으로 독려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격한 징계 규정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시행하여야 합니다. 즉, 안전보건 관련 업무 R&R 및 담당 조직을 점검하고, 업무 R&R 재정립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 감시·감독하는 인력을 편제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1) 경영책임자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안전보건활동 내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바, 모든 항목에서 미흡한 부분의 개선조치가 완료되었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명확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중대재해특별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건설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은 반면, 다수의 근로자 및 종사자가 여러 공사에 관여되어 있고, 개별적인 건설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사고 발생의 위험 요소가 상이하므로, 산업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광범위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기존의 법률 분쟁 내지 준법활동이 사고의 사후적 처리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고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얼마나 관련 **컴플라이언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는,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key)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건설산업에서 CM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재조명되고 있으며, 특히 관련 업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